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근거 마련〉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89호)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준호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6. 11.
3. 회 부 일 : 2024. 6.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회사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 인력의 확보를 위해 활용되는 주식연계형 보상제도로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주식매수선택권과 성과조건부 주식교부계약 및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등이 있음.

그러나 실무상 봉급 이외의 보상방법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일정한 제한조건을 붙여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 현행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 법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방법, 부여 대상, 부여수량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둬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42조의4 및 제342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회사가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무상으로 근속, 성과 달성 등 장래의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일정기간 동안 양도를 금지하는 조건이 붙은 주식 또는 정해진 수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2조의4 및 제342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42조의4(양도제한조건부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무상으로 근속, 성과 달성 등 장래의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기간 동안 양도를 금지하는 조건이 붙은 주식 또는 정해진 수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

현행	개정안
<신 설>	<u>사하는 자</u>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할 회사의 자기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2조의5(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①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를 위한 주식의 종류와 수 3.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양도제한 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방법 3.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4.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양도제한 기간 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현행법에서는 회사의 이어나 피용자 등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주식연계형 보상제도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도입하고 있음.¹⁾

○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됨(제340조의2²⁾).

○ 주식매수선택권은 주가가 권리행사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저가 매수한 후 이를 처분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연동형 보수의 성격을 가지는 제도로, 1999년 12월 31일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됨.

1)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2)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상법」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³⁾,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⁴⁾하고 있음.

□ 개정안은 주식매수선택권과 함께 실무상 주식연계형 보상제도로

- 3)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제34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2.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 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활용되고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관한 일반적·명시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통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려는 취지임.

○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RS)은 특정조건 충족을 조건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을 임직원에게 부여하고, 조건 미충족 시 주식 부여를 취소하는 주식연계형 보상제도로, 주식의 지급시기에 따라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인수권(Restricted Stock Unit; RSU)과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estricted Stock Award; RSA)로 구분됨.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인수권은 특정조건이 달성될 경우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조건 미충족 시 해당 권리가 소멸됨.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은 양도제한 조건이 부과된 주식을 지급 하되, 특정조건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된 주식을 환수함.

○ 2020년 한화그룹에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인수권을 최초로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 네이버, 쿠팡, 두산, 크래프톤 등 다양한 회사에서 활용되고 있음.⁵⁾⁶⁾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인수권을 도입한 주권상장법인 현황을 살펴보면,

5) 이수진, 양도제한조건부주식, 편법인가 혁신인가? - 미국의 활용례를 통해 살펴본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4년, p.1

6)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의 경우 환수 시 세금문제·환수방법의 복잡성 등 현실적으로 주식을 환수하는 것이 쉽지 않아 국내에서 활용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움(이수진, 위의 글, p.3).

2020년 8개 → 2021년 7개 → 2022년 17개 → 2023년 6월 12개임.⁷⁾

□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제도의 불명확성 제거를 통한 기업의 우수인력 고용 및 이탈 방지수단으로서의 활용 촉진⁸⁾ 및 경영세습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서의 악용 가능성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장점으로는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무상지급되기 때문에 보상수단으로서의 그 효과에 대한 주식시장의 영향이 적고, 자기주식으로 지급되어 주가 희석화의 우려도 크지 않으며, 가득기간(vesting period)을 장기로 설정한 경우 단기실적을 추구하려는 유인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⁹⁾

○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단점으로는 법령상 근거·규제가 있는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 확대

7) 2023. 12. 20.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기업이 임직원 보상으로 주식을 활용(주식기준보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관련 현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등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제도 개선 -”

8)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입의사는 있으나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고,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의 도입에 대한 장애물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설계의 어려움’,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어려움’, ‘법·회계 전문인력의 부재’, ‘복잡한 법·제도 및 절차로 인한 애로 존재’와 같이 정보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여 대기업에 비해 법·회계분야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법적 공백으로 인한 모호함에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수진, 앞의 글, p.10~11)

9) 기업의 우수인력 고용 및 이탈 방지수단으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 하락시기에 보상수단으로서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고, 신주발행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 가능하여 주가의 희석화에 따른 주주들의 반발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 단기실적을 확대하는 이익조정행위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한계가 있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¹⁰⁾, 기업들의 관련 정보 공시 여부 및 공시 수준이 일정하지 않아 투자자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¹¹⁾을 들 수 있음.

- 참고로, 2024. 1. 9.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2024. 7. 10. 시행됨.¹²⁾

-
- 10)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여할 수 없고 부여자격과 발행수량에 제한이 있으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은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악용이 가능하고, 최근 한화 및 두산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부여한 사례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가득한 점도 이러한 점에서 기인한다는 의견(이수진, 앞의 글, p.10)
- 11)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주요 사항보고서, 대량보유 및 주식소유상황 보고 서식을 개정(2023년 말 시행)하였음(2023. 12. 20.자 금융감독원 앞의 보도자료).
- 12)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자격 요건
 4.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의 내용
 5.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뜻
-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 각각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정하는 제한 및 조건
-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 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 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4항의 계약서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당사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정관에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다만,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부여절차가 간편하고 부여대상·부여한도 등의 제한이 없어 좀 더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다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의 장점¹³⁾이 양도 제한조건부주식에 관한 법률규정 마련으로 인하여 사라진다는 지적이 있음.¹⁴⁾

○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한계에 따른 대안으로 활용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하게 규율하는 것(참고자료)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제도적 가치를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있음.¹⁵⁾

- 개정안에서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¹⁶⁾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¹⁷⁾를 필요로 한다는 차이가 있음.

13)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의 장점으로서는 주식매수선택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보상 가치가 더 크고, 임직원의 장기성과·장기재직 및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며, 부여가 간편하다는 점을 들 수 있고,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의 간편한 부여는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수진, 앞의 글, p.7~9).

14)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에 대한 규제 신설로 인하여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의 활용이 위축되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보상수단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15)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법제화 방식으로는 ① 미국처럼 경영진의 보수에 관한 사항과 공시기준을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과 ② 주식매수선택권처럼 부여절차와 대상, 한도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있고, 간접적 규제방식은 새로운 유형의 주식기준보상제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직접적인 규제방식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대한 세밀한 가이드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이수진, 앞의 글, p.16~17).

16)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참고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 주식교부계약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055

17)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참고

주식매수선택권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개정안) 비교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제한조건부 주식(개정안)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u>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	제342조의4(양도제한조건부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주주총회 결의로</u>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무상으로 근속, 성과 달성 등 장래의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기간 동안 양도를 금지하는 조건이 붙은 주식 또는 정해진 수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할 회사의 자기주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제한조건부 주식(개정안)
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2조의5(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①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를 위한 주식의 종류와 수 3.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양도제한 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제한조건부 주식(개정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을 정하여야 한다. 1.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방법 3.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4.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양도제한 기간 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